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및 세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계획 등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고, 조사통계 사무,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사무 수행시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자료의 수집·분석 제공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개의(開議)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규정 신설(안 제6조)

라. 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

마.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 근거 (안 제8조)

바.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위임 범위 및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근거(안 제11조)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확대(안 제1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첨　　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통령령 제 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전문위원회
2.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나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해당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제4호”를 “법 제13조제5항제4호”로,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으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20

조제1항”으로, “위임한다”를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 ·단체에 위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법 제5조”를 “법 제8조”로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를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중 질병관리청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제12조(종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5조”를 “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조”를 “법 제9조”로,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을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8조”를 “법 제10조”로, “역학조사의 실시”를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제12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을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신 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전문위원회 2.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전문

	위원회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나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해당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제4조(역학조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9조(역학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0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5항제4호---------- 법 제13조제1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제6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 및 관리	1. 법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중 질병관리청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의 시행 및 관리 2. 법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사무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제11조----------. 1. 법 제8조----------

2. 법 제7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3. 법 제8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신 설>	4. 법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제1항----------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신 설>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② 법 제12조제1항----------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

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